



**Child Safe
Organisations**
National Principles



**National Principles
for Child Safe
Organisations**

호주 인권위원회는 본 출판물에 기재된 정보의 보급 및 교환을 장려하며 [Australian Governments Open Access and Licensing Framework](#) (AusGOAL)의 이용을 지지합니다.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ce 하에서 본 출판물에 기재된 모든 자료에 라이선스가 있지만, 다음은 예외입니다:

- 사진 및 이미지;
- 인권위원회의 로고, 모든 브랜딩 또는 트레이드마크;
- 제삼자가 제공한 콘텐츠나 자료; 그리고
- 그 외 달리 명시된 경우.

이 라이선스의 사본을 보시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legalcode>

출처가 호주 인권위원회임을 밝히고 기타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본 출판물을 자유롭게 복제, 전달, 각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18.

감사인사:

호주 인권위원회는 아동안전기관을 위한 국가원칙 (National Principles for Child Safe Organisations) 프로젝트에 대해 호주 사회복지서비스부가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국가원칙들은 모든 사법관할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부지에서 제공하는 관리와 지도 하에서 개발되었음을 밝힙니다.

더 자세한 정보:

본 출판물의 저작권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Communications Unit (홍보부)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GPO Box 5218

SYDNEY NSW 2001

전화: (02) 9284 9600

이메일: communications@humanrights.gov.au

머리말

아동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로열 커미션이 호주 기관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를 밝혀냈습니다.

로열 커미션은 호주 전국의 기관들로 하여금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동안전기관을 위한 국가원칙 (이하, 국가원칙) 개발은 로열 커미션의 권고에 대한 답변으로, 핵심 국가 개혁 중 하나입니다.

이 국가원칙은 호주의 모든 연방정부, 주 및 테리토리 정부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국가원칙은 아동과 관련된 전국의 기관들이 아동안전문화를 내재하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제공하며, 아동안전기준과 관련된 로열 커미션의 권고를 실행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국가원칙과 관련된 안내 자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어린이협회의 의장인 Megan Mitchell이 이 국가원칙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개발은, [Third Action Plan 2015-2018 of the Na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Australia's Children 2009-2020](#) 하에서, 호주 전역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관들을 비롯하여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주요 옹호 단체들과 학계의 대표자들도 이 개발에 기여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이 국가원칙의 채택은 호주의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Scott Morrison

호주 총리

호주정부연합회 의장

서문

호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기관들이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일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플레이그룹 등과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소규모 조직들도 있고, 혹은 학교, 병원, 교회 등과 같이 매우 조직적인 구조를 갖춘 기관들도 있습니다. 직원 그리고/혹은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여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함께 일하는 사업체나 조직들도 있습니다. 일부 기관들은 주의 경계를 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호주의 기관들이 어린이들을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확산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13년에 아동성학대에 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로열 커미션을 출범하였습니다. 로열 커미션의 최종 권고는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기관들이 아동의 권리, 필요, 흥미에 부합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신뢰를 일반 대중,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 보호자, 가족 및 지역사회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로열 커미션, 호주 아동 커미셔너 및 가디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창출을 위한 2005 내셔널 프레임워크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안전기관을 위한 국가원칙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국가원칙은 아동이 관련된 호주 사회의 모든 부문에 아동 안전 문화를 내재하는 범국가적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국가원칙은 아동 권리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로열 커미션이 권고한 기준에 근거하여, 기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키우고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실현하며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실행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다양한 조직의 유형, 규모 및 역량을 인정하기 위해, 이 국가원칙은 아동안전기관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이 국가원칙은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출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실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출신의 가족들과 공동체들은 문화적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고,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출신의 아동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소통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세대간의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국가원칙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아동안전기관이란 아동의 웰빙의 증진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 전략을 채택하고, 조치를 취하는 기관입니다. 아동안전기관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 아동 안전과 웰빙이 생각, 가치,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아이들의 진정한 참여를 강조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줄이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 해를 입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 우려, 피해폭로, 의혹 혹은 의심에 대해 대응합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호주 전지역의 기관이나 조직에서 아동안전을 위한 국가원칙을 채택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동 안전 및 웰빙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어린이 안전 휠



아동안전기관을 위한 국가원칙

1. 아동의 안전 및 웰빙을 조직의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에 내재한다.
2.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3. 가족과 지역사회는 아동 안전과 웰빙에 대한 정보를 받고 참여한다.
4.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 공정성이 지켜지고 다양한 요구가 존중된다.
5.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적격하며 아동 안전 및 웰빙 가치를 실무에 반영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6. 불만과 우려에 대한 절차는 아동 중심이다.
7.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 기능 및 인식을 가진다.
8. 물리적 환경과 온라인 환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반면, 안전과 웰빙을 증진한다.
9. 아동안전 국가원칙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10. 정책과 절차는 해당 기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안전한지를 문서로 보여준다.

지침

호주는 1990년에 유엔 아동권리헌장을 비준하였습니다. 이 헌장에 따르면, 아동은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권을 가집니다. 아동은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권리도 가집니다. 이 헌장 하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각 원칙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아동이 참여하는 호주의 모든 기관들이 이 국가원칙들을 실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각 원칙에 대한 지침은,

- 해당 원칙의 의도와 핵심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 핵심 활동 영역, 즉 아동 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관들이 어떤 영역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해당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들을 설명하고, 해당 원칙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실제적인 징후들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침은 국가원칙들의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최선의 실천방안을 안내하며, 실행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다양한 조직의 유형, 규모 및 역량을 인정합니다.

아동안전을 위한 전국사무처의 웹사이트를 통해 국가원칙들의 실행을 지원하는 툴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pmc.gov.au/domestic-policy/national-office-child-safety>).

제1원칙

아동 안전 및 웰빙을 조직의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에 내재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제3조: 모든 어른들은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해야한다. 어른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포용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안전 문화가 발전되고 유지될 수 있는 책임의 문화를 장려하는 조직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역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원칙의 채택은 그 기관이 전조직 수준에서 아동 안전과 웰빙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투명하고 아동 안전 및 웰빙을 위한 규정, 실천방안, 행동강령, 위험관리 틀이 포함됩니다. 거버넌스 체계는 기관의 유형,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합니다. 조직 리더십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가해지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핵심 활동 분야:

- 1.1 해당 기관이 아동 안전을 위해 공개 선언을 한다.
- 1.2 아동 안전 문화가 상하향식으로 조직의 전수준에서 지지를 받아 조성된다.
- 1.3 거버넌스 체계는 전수준에서 아동 안전 및 웰빙 정책의 실행을 촉진한다.
- 1.4 행동강령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기대되는 행동 기준과 책임을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1.5 위험관리 전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악하고,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 1.6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정보 공유 및 기록 보관에 관련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해당 기관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정책, 실천방안, 정보공유 프로토콜,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동강령, 위험관리 전략 등을 문서화 하였으며, 대중이 현재 유효한 그 문서들을 이용할 수 있다.
- 조직의 리더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동 안전과 웰빙에 대한 노력을 중시하고, 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태도와 행동을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직무진술서, 성과협약서,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평가 절차에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대한 노력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직원, 자원봉사자, 청소년은 아동의 권리 (안전할 권리 및 의견 제시 권리 포함)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리더들은 아동의 안전 및 웰빙과 관련된 좋은 실천방안과 학습을 공유하도록 장려합니다.

제2원칙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CRC 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원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동 안전 및 웰빙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원하는 조직 문화를 설명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안전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아동 안전 및 웰빙에 대한 해당 기관의 노력에 대해 알고, 관련된 정보와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안전한 환경을 인식하고 보호 전략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편안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과 우려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기관 내에서 아동의 안전 및 웰빙을 책임지는 당사자는 그 기관과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편안하고 노련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발달 요구를 이해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장점과 능력을 강화합니다.

핵심 활동 분야:

- 2.1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안전, 정보, 참여의 권리를 비롯해, 자신의 모든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 2.2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고립감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정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또래들의 지원이 장려된다.
- 2.3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에서 적절한 경우, 아이들이 연령에 맞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한다.
- 2.4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피해를 알리는 징후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우려를 제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안전의 권리, 경청될 권리 등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구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연령에 맞는 플랫폼을 주도적으로 제공합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달 요구를 잘 이해합니다.
- 참여를 위한 기회들은 문서화 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 조직 환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입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안전 문제 및 위험 파악 등과 관련된 기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친구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또래들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제3원칙

가족과 지역사회는 아동의 안전과 웰빙 증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한다.

CRC 제5조: 가족은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

이 원칙은 아동 안전 및 웰빙, 관련 정책 및 실천, 이용 가능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기관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드백과 참여를 장려한다는 사실을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알리는 데 유용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관한 대화 그리고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는 방법과 시기에 관한 대화를 열고 주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힘을 실어 드릴 것입니다.

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며, 자녀의 일차적 보호 네트워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구조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배경과 문화 속에서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들의 역할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호자는 아이의 필요와 역량에 대해 가장 잘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이에게 안전한 실천방안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기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핵심 활동 분야:

- 3.1 가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 3.2 아동 안전을 위한 기관의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기관은 가족 및 지역사회와 솔직하게 소통하며, 관련 정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3.3 기관의 정책과 실천방안을 개발하고 검토할 때, 가족과 지역사회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 3.4 부모, 보호자, 지역사회는 기관의 운영 및 거버넌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문화적 안전 등을 비롯하여, 가족과 사회의 필요에 대해 기관이 대응합니다.
- 가족과 지역사회가 기관 운영 방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자녀의 참여와 피드백을 장려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아동 안전 및 웰빙 정책, 행동강령, 기록보관 실무, 불만 제기 및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기관은 운영 및 정책에 관한 명료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관은 아동 안전 및 웰빙 사안에 관하여,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피드백을 구하고 그 피드백을 정책과 실무에 반영시킵니다.
- 기관은 파트너십과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문화적 안전을 조성하는 접근방식을 지원합니다.

제4원칙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다양한 필요가 존중된다.

CRC 제2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사는지,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성적체성이나 성별이 무엇이든지,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장애가 있는지, 가난한지 부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은 권리를 가진다.

정책과 실무에 있어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다양한 필요가 존중된다.

이 원칙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인정하는 기관이 어떻게 아동 중심으로 일할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원칙은 아동의 장점과 개인적 특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능력, 성별, 성적체성,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편하게 느끼고,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우호적인 기관입니다. 이 원칙은 차별, 배제, 괴롭힘, 학대의 위험을 줄입니다.

핵심 활동 분야:

- 4.1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며 취약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대응한다.
- 4.2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지원 및 불만제기 절차를 이용한다.
- 4.3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 출신의 아동, 장애를 가진 아동,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 집에서 살 수 없는 아동,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간성 아동과 청소년들의 필요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형평성을 장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합니다.
-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용하기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어린이를 위한 자료를 만들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과 불만제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임원,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지지하고 포용하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요구에 대응합니다.
- 임원,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과 배제로 인해 안전하고 포용적인 문화에 어떤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개발합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다양한 필요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습니다.

제5원칙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적극하며 아동 안전 및 웰빙 가치를 실무에 반영하도록 지원을 받는다.

CRC 제3.3조: 안전, 보건, 직원수, 직원의 적격성, 관리감독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관이 정한 기준을 아이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 안전 기준의 토대가 되는 적절한 선발과정을 포함하여, 채용 및 직원 개발 정책을 설명합니다. 이 원칙에는 신입사원 교육, 아동 안전 책임 및 문화적 안전 개념에 대한 이해,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도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기록보관 교육, 정보 공유를 통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유용한 툴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가 증진됩니다.

핵심 활동 분야:

- 5.1 채용 광고, 신원 확인, 직원 및 자원봉사자의 채용 전 심사 등의 채용 과정에서 아동 안전 및 웰빙이 강조된다.
- 5.2 관련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아동과 함께 일하기 위한 검증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신원확인을 받았다.
- 5.3 모든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적절한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지한다 (예: 기록 보관, 정보 공유, 신고 의무 등).
- 5.4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인력관리는 아동 안전 및 웰빙에 중점을 둔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기관은 직원과 자원봉사자 채용을 위해 광고를 내고, 모집하고, 선발할 때 아동 안전 및 웰빙에 대한 기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 직무진술, 채용기준, 신원확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존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아동의 안전과 웰빙에 대한 노력, 아동의 발달 요구 및 문화적으로 안전한 실무에 대한 이해를 입증합니다.
- 고용주, 직원 및 자원봉사자는 신원확인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해당 기관의 아동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이해하며 기록의 책임, 정보 공유의 책임 및 신고의 책임을 이행합니다.
- 직원을 위한 지속적 지원, 관리감독 및 성과관리 절차에 아동 안전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기관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적절한 기록 시스템과 프로토콜을 유지합니다.
- 기관은 위협을 조사하고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툴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6원칙

불만과 우려에 대응하는 절차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다.

CRC 제42조: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를 가진다! 어른들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하며, 아이들이 그 권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원칙은 인력관리 정책 및 실천방침 그리고 불만 관리 절차가 어떻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불만 관리 절차는 행동강령과 연계되어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 시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상세 정보도 제공합니다. 훈련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방치, 그루밍을 비롯한 기타 피해를 인지하고 대응하여, 그러한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법적 요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만에 대한 대응, 개인정보보호, 경청 기술, 피해 폭로, 신고 의무 등을 지원하는 교육도 포함됩니다.

핵심 활동 분야:

- 6.1 기관은 이용가능한, 아동 중심의 불만처리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 정책은 리더십,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역할과 책임, 다양한 불만을 처리하는 방식, 관련 정책이나 행동강령의 위반, 행동 및 신고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 6.2 효과적인 불만 처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가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으로 안전하다.
- 6.3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
- 6.4 기관은, 법률 요건에 관계 없이, 관련 당국에 불만과 우려를 신고하는 정책과 절차, 그리고 법률집행 기관과의 협조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 6.5 신고, 개인정보보호 및 고용에 관한 법적 의무를 충족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 신고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의무, 피해폭로 대응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기관 내에서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을 지적하고 그러한 행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지원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 불만 처리 정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정책에 대한 해석과 활용에 있어서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 정책과 절차는 불만이나 조사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경우, 지원과 정보 포함).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려나 고민을 표현하고 피해를 폭로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관련 정책이나 행동강령의 위반을 비롯하여, 모든 불만이나 우려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절차, 타임프레임, 기록보관 업무 등과 관련된 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문제들이 파악되고 해소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누구와 상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우려나 불만을 제기한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족, 직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신속한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사건, 우려 및 불만에 관한 보고도 포함됩니다.

제7원칙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 기능, 인식을 갖추고 있다.

CRC 제19조: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원칙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정보, 지속적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문 세미나 및 멤버십, 지도 하에 진행되는 동료와의 논의, 팀 교육 세션, 연구 및 출판물 열람 등을 통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증거기반의 실무 툴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아동 발달,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동의 피해를 알리는 신호들을 파악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료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해당 기관의 내부 혹은 외부에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알리거나 그러한 징후를 보일 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 및 작성된 기록의 사용 그리고 기록을 보는 이용자와 관련하여,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핵심 활동 분야:

- 7.1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아동 안전 및 웰빙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을 받는다.
- 7.2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아동의 피해를 나타내는 지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관련 정보를 받는다 (다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야기한 피해도 포함).
- 7.3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아동 안전 및 웰빙 관련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폭로하는 동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관련 정보를 받는다.
- 7.4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정보를 받는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아동 안전 및 웰빙을 위한 정책과 절차, 증거기반 실무에 관한 직원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해당 기관이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 해당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가해진 피해나 위험을 폭로하는 직원과 자원봉사자를 옹호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관한 기록 생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받습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아동 피해의 다양한 징후들을 인지합니다.
- 아동 안전 및 웰빙 문제나 문화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합니다.

제8원칙

물리적 환경과 온라인 환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웰빙을 증진한다.

CRC 제17조: 아동은 라디오, 신문, 책, 컴퓨터 및 기타 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웰빙에 중요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정보가 해롭지 않은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원칙은 물리적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 피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예방기전임을 강조합니다. 위험 관리 전략은 어른 대 아이 간의 교류 혹은 아이들 간의 교류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밝힙니다.

기관 내의 기술적 플랫폼은 교육, 소통 및 도움 요청을 위해 중요한 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예: 어린이와 청소년, 부모님, 직원, 자원봉사자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기대 행동, 안전 필터 활용, 의사소통 프로토콜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핵심 활동 분야:

- 8.1 사생활, 정보 이용, 사회적 관계, 학습 기회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온라인과 물리적 환경에서 위험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인다.
- 8.2 기관의 행동강령,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정책과 실무에 따라 온라인 환경이 이용된다.
- 8.3 위험관리 계획은 조직의 상황, 활동 및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을 고려한다.
- 8.4 제삼자와 설비 및 서비스 계약을 맺는 기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납품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아이들 간의 교류 및 어른 대 아이 간의 교류에서 생기는 위험들과 물리적 공간의 상태와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들을 비롯하여, 기관의 위험관리 전략은 물리적 위험과 온라인 상의 위험을 다룹니다.
- 기관의 정책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앱의 사용을 장려합니다.
- 물리적 환경을 통해 문화적 안전을 증진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물리적 위험과 온라인 상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입니다.
-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기관의 행동강령 및 관련된 의사소통 프로토콜에 따라 접속하고 온라인 환경을 이용합니다.
- 어린이와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기관의 기술 및 안전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설비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한 제삼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과 웰빙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9원칙

아동안전 국가원칙의 실행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된다.

CRC 제29조: 아동의 교육은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은 또한 아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안전기관들이, 아동안전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하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기관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조직의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예: 기록보관 업무 등). 직원, 자원봉사자,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 멘토가 그 평가에 참여하고 개입하면 기관의 아동보호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 보고, 좋은 실천방안의 공유, 정기적인 학습의 중요성도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관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나 우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활동 분야:

- 9.1 기관은 아동 안전 실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한다.
- 9.2 불만, 우려 및 안전사고는 원인과 제도적 실패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된 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 9.3 기관은 관련된 평가 결과를 직원 및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및 가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고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기관은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정책, 절차 및 실무에 대한 정기 평가에 어린이와 청소년들,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 평가 문서에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지표들이 포함됩니다.
- 평가 결과는 아동 안전 실무 개선을 위해 고려되고 실행됩니다.
- 정기적인 불만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 실무 개선을 보여줍니다.

제10원칙

정책과 절차는 해당 기관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CRC 제4조: 기관들은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할 책임을 가진다. 기관들이 가족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이 원칙은 기관들이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하여 문서화된 정책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직원과 자원봉사자,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족과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아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금 지원을 받는 협력 부처들이나 기관들은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정책과 실무방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책과 절차의 문서화를 통해 아동 안전 실천방침을 전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들은 이러한 문서화를 통해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원칙과 실천방안을 검토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핵심 활동 분야:

- 10.1 정책과 절차는 아동안전 국가원칙을 모두 다룬다.
- 10.2 정책과 절차는 문서화 되었고, 이해하기가 쉽다.
- 10.3 최선의 실천 모델과 이해관계자 협의는 정책과 절차 개발에 기여합니다.
- 10.4 리더들은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지지하고 모범을 보인다.
- 10.5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정책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행한다.

이 원칙이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

-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기관의 정책은 종합적이며 10개의 원칙을 모두 다룹니다.
- 아동 안전 및 웰빙에 관한 기관의 정책과 절차는 직원, 자원봉사자, 가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문서화됩니다.
-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감사는 해당 기관이 거버넌스, 리더십, 문화를 통해 어떻게 아동안전기관이 되었는지를 증명해 줍니다.
- 기관 내에서의 실천방안은 전기관에 걸쳐 일관적이며, 아동 안전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불만과도 양립합니다 (문화적으로 안전한 업무 실천방안 포함).
-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안전 문화를 장려하는 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증명합니다.
- 임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설문조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절차 및 실무 요건에 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호주 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의 요청을 받아, 아동안전기관을 위한 국가원칙을 위한 협의와 개발을 주도하였습니다. 목표는 모든 조직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안전과 웰빙을 증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원칙들의 실행 및 관련 자료 개발을 위해 국가부문 기관들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동안전기관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childsafe.humanrights.gov.au/>

연락처: childsafe@humanrights.gov.au

아동안전을 위한 전국사무처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pmc.gov.au/domestic-policy/national-office-child-safety>

연락처: NationalOfficeforChildSafety@pmc.gov.au